

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 정보) 제공 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| | | | |
|-----|----|------|----------|
| 신청인 | 구분 | 등록번호 | 성명 |
| | 주소 | | |
| | | | (전화번호:) |

| 신청인 과의 관계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⁾ (서명 또는 인) |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는 경우 기재 ²⁾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|--|
| | | | | 주소 및 전화번호 |
| 동의인 (신청인 및 그 가구원) | | - | | |
| | | - | | |
| | | - | | |
| | | - | | |
| | | - | | |
| | | - | | |
| | | - | | |
| | | - | | |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정보제공 | [] 취업지원 대상 여부 확인 |
| 목적 | [] 교육지원 대상 여부 확인 |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회사등의 장 ·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

-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또는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-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,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: 뒷면 참조
- 정보제공 목적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

< 금융회사 등의 명칭 >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
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나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다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- 마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- 바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- 사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- 아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- 자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- 차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- 카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- 타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- 파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- 하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기관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
 - 전국은행연합회 등

< 금융정보등의 범위 >

1. 금융정보
 - 가.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
 - 나.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: 잔액 또는 총 납입액
 - 다.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: 최종시세가액(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)
 - 라.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, 양도성 예금증서: 액면가액
 - 마. 연금저축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2. 신용정보
 - 가.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- 나. 신용카드 미결제금액
3. 보험정보
 - 가. 보험증권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- 나. 연금보험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